

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의안 번호	87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2년 6월 15일

발의자 : 김명수 의원 외 11인

1. 주 문

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별첨과 같이 요구합니다.

2. 제안이유

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42조
-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
-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 제70조

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

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에서 주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0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·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.

- 출석 장소 :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장
- 출석 이유 : 주요안건 처리와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
- 출석 일시 : **2012. 6.20(수), 7.4(수), 7.5(목), 7.6(금), 7.9(월) <5일간>**
- 출석 대상

[서울특별시]

서울특별시장, 부시장, 실·국·본부장, 지방공사 및 공단사장, 출자·출연법인의 임원,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공무원 등 「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」 제50조 제3항에 규정된 자

[서울특별시교육청]

서울특별시교육감, 부교육감,
실·국장 및 답변에 필요한 3급 이상 소속 공무원